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보전협회의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·감독 근거를 마련한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918호, 2022. 6. 10. 공포, 2023. 6. 11.시행)됨에 따라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·보조금의 지급 등 절차 규정(안 제25조)

- 1) 한국환경보전원이 법에 따라 출연금·보조금을 요구하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·보조금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- 2)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·보조금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안에 편성하고,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에 통보하여야 함
- 3) 한국환경보전원이 출연금·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,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- 4)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에 지급하여야 함
- 5) 법 개정예 따라 규정 필요성이 없어진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

나.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신설(안 제26조)

- 1)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,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관련 사업, 측정대행계약 관리 관련 사업, 그 밖에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

다.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(안 제27조)

- 1)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2) 한국환경보전원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3) 한국환경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·지출의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·보조금 지급 등) ① 법 제5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(이하 “보전원”이라 한다)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(이하 “출연금등”이라 한다)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
2.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보전원이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

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6조(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)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
2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된 사업
3. 측정대행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
4.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7조(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보전원의 원장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전원의 원장이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,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③ 보전원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·지출의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

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
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보고서
3. 수입·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제14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⑦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4항제3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⑩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2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“환경보건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건원”으로 한다.

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건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건원”으로 한다.

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9항 중 “환경보건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건원”으로 한다.

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 중 “환경보건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건원”으로 한다.

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3항제2호 중 “환경보건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건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5조(환경보전협회의 회원) 법 제59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u> <u>1.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(業)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·제작·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</u> <u>2.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·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</u> <u>3.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</u>	<u>제25조(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·보조금 지급 등) ① 법 제5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(이하 “보전원”이라 한다)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(이하 “출연금등”이라 한다)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</u> <u>2.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</u> <u>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u>

	③ <u>보전원이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④ <u>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</u>
<u>제26조(사업계획 등)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	<u>제26조(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)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u> <u>1.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</u> <u>2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된 사업</u> <u>3. 측정대행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</u> <u>4.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<u>제27조(사업 보고) 환경보전협회</u>	<u>제27조(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</u>

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획서 등의 제출) ① 보전원의 원장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전원의 원장이 이미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,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보전원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·지출의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	<u>1.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</u> <u>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와 집행실적보고서</u> <u>3. 수입·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</u> <u>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 료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교육팀	
연 락 처	(044) 201 - 6536